

진단검사실 검사시약 특수 조건

가. 검사시약의 공급 및 사용상 필요한 조건

1. 검사시약(이하 검사재료)은 검사결과의 오차를 발생하지 않게 하여 최고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검사재료에는 품명, 규격, 단위, 제조일자, 제조번호(Lot No.), 유효기간(사용기한), 보관(저장)방법, 입고일자등을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하고, 포장 단위마다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3. 낙찰 업체는 계약된 검사재료의 제조사, 품명, 규격, 단위를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요구한 검사재료가 소량일지라도 납품을 지체 또는 거부할 수 없다.
4. 낙찰 업체는 연간단가 계약 후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된 검사재료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제품사양 (Catalog No, 규격, 제조번호(Lot No))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5. 낙찰 업체는 납품 시 납품서와 본원에서 지정한 입고기록서 양식을 첨부하여 당일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직원의 불량 판정시 재 납품요구 및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한다.
6. 낙찰 업체는 계약 만료 전에 검사재료의 생산이 중단되어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된 검사재료로 공급하여야 할 경우,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조회사 확인서 (또는 납품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7. 낙찰 업체는 진단검사실 검사재료 사용량과 검사건수를 비교하여 유효기간이 납품일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미 납품된 제품이라도 유효기간 도래, 다량재고 등의 사유로 교환 및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낙찰 업체는 물품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단검사실에 납품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부득이 위탁수단(철도, 정기화물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착지로부터 진단검사실 까지 계약자가 운송하여야 하고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망실, 파손 등 이에 다른 제경비 (노임, 운반비 등) 일체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9. 낙찰 업체는 제품에 명시된 Test 수와 동일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10. 낙찰 업체는 공급된 검사재료로 검사를 시행 후 검사결과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교체 또는 진단검사실에서 요구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 계약수량은 계약 당시 추정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익제기 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12.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건(발주일)에 대한 물품이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지시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시는 통신수단(전화, 팩스)등을 이용하여 지시할 수 있다.
13. 상기 내용 이외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후관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